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6호 2019. 10. 4(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19-10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9-1682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남원시 공고 제2019-1692호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9-10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04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24-3, 24-5번지
 - 나. 사 업 량 : 10,718㎡
 - 다. 사업기간 : 2018. 11. ~ 2020. 03.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인*면 구**길 1*-*4, 강**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준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고 제2019-1682호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관 광 과 장

1. 개정이유

준향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준향제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4조)
- 나.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 ~ 2019. 10.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심사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춘향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감사”를 “감사 각”으로,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임기 중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 검토대상** :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 해당없음
- 검토 방향**
 - 규제의 신설·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
- 검토의견** : **비 심사대상**
 - 사회통념상 당연한 위원의 구성 및 해촉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아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춘향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u>,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u>감사</u>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u>위원</u>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u>춘향문화선양회</u>장을 포함하여 7명의 <u>추대위원회</u>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1. <u>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u> 회원 및 <u>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u></p> <p>2. 3. (생략)</p> <p>④ (생략)</p> <p><신설></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 ----- <u>위원장</u>----- ----- ----- <u>감사</u> 각 ----- ----- <u>위원</u>으로 <u>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u> ----- ----- -----.</p> <p>② ----- ----- -----<u>7명</u>----- ----- -----.</p> <p>③ ----- ----- -----.</p> <p>1. <u>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u></p> <p>2.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해촉)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p>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기 중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9 - 1692호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남원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트센터 목적, 명칭,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 나.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1조)
- 다. 아트센터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24.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07),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남원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트센터 목적, 명칭,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 나.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1조)
- 다. 아트센터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 ~ 2019. 10.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남원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남원시 만인로 92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센터”란 전시·공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아트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대관”이란 제2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아트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공연 등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아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2.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3. 각종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4.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5. 그 밖에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아트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10일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아트센터 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아트센터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아트센터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시장은 아트센터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허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담당자 이항원					
4. 근거법령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아트센터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신청자					
6.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산설규제》</p> <p>「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허가) 아트센터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p>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아트센터 조성하였으며, 남원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규제가 신설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남원아트센터는 시민의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위

해 제공하는 시설인 행정재산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실태파악, 감독 등을 위하여 신청서 작성·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규제의 실현가능성

- 기술수준 등과 관련성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남원아트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받아 실태파악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비용분석과 편익분석 결과 규제로 인한 새로운 비용 발생은 없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편익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 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에 사용자의 명확성이 확보됨

나. 규제의 존속기한의 타당성

- 본 조례 존속 시 유효한 사항으로 규제 존속기간 미설정은 타당함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